

1. **안건명** :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중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2003.5.29, 법률 제6902호) 시행됨에 따라 중평군의회위원의 중원선거에 대비하여 시·군의회 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선거구 조정
 - 중평군 : 2선거구(중평읍선거구, 도안면선거구)를 신설하고
 - 괴산군 : 13선거구 \Rightarrow 11선거구(중평읍선거구, 도안면선거구 폐지)로 함
- 의원정수 조정
 - 중평군 : 7명(중평읍선거구 5명, 도안면선거구 2명)으로 하고
 - 괴산군 : 13명 \Rightarrow 11명(Δ 2명 : 중평읍선거구 1명, 도안면선거구 1명)으로 함

4. **의안전문**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6.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7. **제안자 의견**

- 중평군설치에관한법률에 의거 2003.10.30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일에 정수에 미달되는 중평군의원 5명을 선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중 영동군의회의원란 다음에 중평군의회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중평군의회의원 (7)		
중평읍선거구	5	중평읍일원
도안면선거구	2	도안면일원

동표중 “괴산군의회의원(13)”을 “괴산군의회의원(11)”로 하고, 괴산군의회의원란중 중평읍선거구 및 도안면선거구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u><신 설></u>			<u>중평군의회의원(7)</u>		
			<u>중평읍선거구</u>	<u>5</u>	<u>중평읍의원</u>
			<u>도안면선거구</u>	<u>2</u>	<u>도안면의원</u>

현 행			개 정 안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u>피산군의회의원(13)</u>			<u>피산군의회의원(11)</u>		
<u>피산읍선거구</u>	<u>1</u>	<u>피산읍의원</u>	<u>(현행과 같음)</u>		
<u>중평읍선거구</u>	<u>1</u>	<u>중평읍의원</u>	<u><삭 제></u>		
<u>감물면선거구</u>	<u>1</u>	<u>감물면의원</u>	<u>(현행과 같음)</u>		
<u>장연면선거구</u>	<u>1</u>	<u>장연면의원</u>			
<u>연풍면선거구</u>	<u>1</u>	<u>연풍면의원</u>			
<u>칠성면선거구</u>	<u>1</u>	<u>칠성면의원</u>			
<u>문광면선거구</u>	<u>1</u>	<u>문광면의원</u>			
<u>청천면선거구</u>	<u>1</u>	<u>청천면의원</u>			
<u>청안면선거구</u>	<u>1</u>	<u>청안면의원</u>			
<u>도안면선거구</u>	<u>1</u>	<u>도안면의원</u>	<u><삭 제></u>		
<u>사리면선거구</u>	<u>1</u>	<u>사리면의원</u>	<u>(현행과 같음)</u>		
<u>소수면선거구</u>	<u>1</u>	<u>소수면의원</u>			
<u>불정면선거구</u>	<u>1</u>	<u>불정면의원</u>			

관계법령 발췌

□ 증평균설치에관한법률(2003.5.29, 법률 제6902호)

제1조 (생략)

제2조(충청북도 증평균 설치) ①충청북도에 증평균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명칭	관할구역
증평균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도안면 일원

②충청북도 괴산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증평읍과 도안면을 제외한다.
부칙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대한 특례) 증평균 설치로 인한 지방의회의원 및 증평균수의 선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등과 동시에 실시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 (이하 "자치구·시·군의회"라 한다)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인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

③ (생략)

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등)

본문 및 1. - 2. (생략)

3.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 의회의원은 후보자등록당시의 선거구를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 시·도의원은 당해 시·도가 분할·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시·도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시·도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의원수가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의원정수에 미달하는 수만큼의 증원선거를 실시한다.

4. - 6. (생략)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①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등) 제3호 단서·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는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제23조(자치구·시·군 의회의 의원정수) 또는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획정한 선거구에 의하되, 종전 지방의회의원이 없거나 종전 지방의회 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미달되는 선거구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 ③ (생략)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

제2조(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방법) 법

제23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7인에 미달되는 수에 자치구·시·군의 인구에 대한 각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중 정수부분이 있으면 그 정수만큼 해당 선거구에 추가하고, 소수점이하 부분은 그 수가 큰 순으로 해당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수가 7인에 달할 때까지 1인씩 그 선거구에 추가한다.

중평균 읍·면별 주민등록 인구수

(2003. 8. 30현재)

구분	읍·면·동별	인구수(명)	비율
계	1읍·1면	31,588	
중평균	중평읍	28,218	
	도안면	3,370	

□ 증원되는 의원수(5명) 산출

○ 중평읍선거구

$$- 28,218\text{명(중평읍 인구)} \div 31,588\text{명(총인구)} \times 100 = 89.3\%$$

$$- 5\text{명} \times 89.3\% = 4.46\text{명}$$

○ 도안면선거구

$$- 3,370\text{명(도안면 인구)} \div 31,588\text{명(총인구)} \times 100 = 10.7\%$$

$$- 5\text{명} \times 10.7\% = 0.53\text{명}$$

➔ 정수부분이 있는 중평읍선거구에 4명을 추가하고

소수점이하 부분이 큰 도안면선거구에 1명을 추가함